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피델리티 미국 종류형 주식투자신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델리티 미국 종류형 주식투자신탁-자 수익증권을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 자 신탁 명 : 피델리티 미국 종류형 주식투자신탁-자
2. 자산운용회사명 : 피델리티 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명 :

- 1) 국민은행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전화: 1588-9999 (www.kbstar.com))
- 2) 한국의환은행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전화: 1544-3000 (www.keb.co.kr))
- 3) 우리은행 (주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전화: 080-365-5000(22) (www.wooribank.com))
- 4) 하나대투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전화: 1588-3111 (www.hanadaetoo.com))
- 5) 교보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전화: 1544-0900(www.kyobotrade.co.kr))
- 6) 동부증권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전화: 1588-4200 (www.winnet.co.kr))
- 7) 메리츠증권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5층, 전화: 777-7720 (www.imeritzbank.com))
- 8) 키움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휴증권빌딩 14층, 전화: 1544-9100 (www.kiwoom.com & www.kiwoom.co.kr))
- 9) 한국씨티은행 (주소: 서울시 중구 다동 39번지, 전화: 1588-5753 (www.citibank.co.kr))
- 10) 하나은행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전화: 1588-1111(www.hanabank.com))
- 1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주소: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전화: 02-3702-3114 (www.scfirstbank.com))
- 12) 동양증권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5 동양종합금융증권빌딩, 전화: 1588-2600 (www.myasset.com))
- 13) 굿모닝신한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전화: 1588-8686 (www.gmsh.co.kr))
- 14) 대구은행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18번지, 전화: 1588-5050 (www.daegubank.co.kr))
- 15) 유진투자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유진투자증권빌딩, 전화: 1588-6300 (www.eugenefn.com))
- 16) NH 투자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번지 농협문화복지재단 빌딩, 전화: 2004-4114 (www.nhis.co.kr))
- 17) 우리투자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우리투자증권빌딩 전화: 768-7000 (www.wooriwn.com))
- 18) 한화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전화: 1544-8282 (www.koreastock.co.kr))
- 19) 삼성증권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 전화: 1588-2323 (www.samsungfn.com))
- 20) 현대증권(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전화: 1588-6611(www.youfirst.co.kr))
- 21) 미래에셋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미래에셋빌딩 전화:3774-1700 (www.miraeasset.com))
- 22) 대우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전화: 1588-3322(www.bestez.com))
- 23) ING 은행 서울지점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26 흥국생명빌딩 15층, 전화:317-1800)
- 24)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증권 서울지점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84번지 서울파이낸스센터 29층 전화: 3707-0400)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08년 3월 27일

5.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가.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idelity.co.kr>)

나. 판매회사의 본, 지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행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핵심설명서)

###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5쪽)

1. 명칭 : 피델리티 미국 종류형 주식투자신탁-자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약관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분류 : 증권투자신탁,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4. 자산운용회사 : 피델리티 자산운용주식회사

### II. 투자정보 (☞본문 6쪽)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미국 기업 주식(이하 “미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투자전략	- 투자신탁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 발행 수익증권에 투자하며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미국 관련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함 -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100% 수준
3. 주요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및 환율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7등급 중 3등급으로 중간 내지 높음 - 따라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피델리티 자산운용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www.fidelity.co.kr">www.fidelity.co.kr</a> )에서 확인가능

###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장성문	38세	투자서비스 담당 이사	14개	38,414억 원	일임계좌 운용 및 보험자산 운용기획 등

\*본 자펀드는 최고 100%까지 해당 모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본문 제3부 I. 2. 나. 3) 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모펀드의 운용은 해외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였으며 실제 모 펀드의 운용은 해외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현재 아리스 바티스)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이 투자신탁은 신규로 설정되는 투자신탁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

III.

수수료·보수, 과세 (☞본문 13쪽) 매입·환매, 분배 (☞본문 18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분		지급비율(연간, %)					
종류		종류 A	종류 E	종류 I	종류 CP	종류 N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채간접투자기구 등	기관투자자 등	자산운용회사의 해외계열사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sup>1)</sup>	1.2%	-	-	-	-	
	환매수수료 (90일미만 환매시) <sup>1)</sup>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이익금의 70%	이익금의 70%	이익금의 30%	이익금의 7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80%	연 0.80%	연 0.80%	연 0.80%	연 0.80%
		판매회사보수	연 1.00%	연 1.80%	연 0.10%	연 0.50%	없음
		기타보수	연 0.068%	연 0.068%	연 0.068%	연 0.068%	연 0.068%
		보수합계	연 1.868%	연 2.668%	연 0.968%	연 1.368%	연 0.868%
	기타비용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총보수·비용비율 <sup>2)3)</sup>		연 1.868%	연 2.668%	연 0.968%	연 1.368%	연 0.868%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 주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 주3) 총보수·비용비율 산정시 모두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음

2. 과세

수익자는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07. 5. 1. 현재 개인 15.4%, 일반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세부사항 본문참조 요함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9시~오후5시)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후
매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b>다음 영업일(D+1)</b>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begin{array}{ccc} D &amp; &amp; D+1 \\   &amp; \text{---} &amp;   \\ \text{자금납입} &amp; &amp; \text{수익증권 매입} \\ \text{(5시 이전)} &amp; &amp; \text{(D+1 기준가 적용)} \end{array}</math> </div>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b>제3영업일(D+2)</b>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begin{array}{ccc} D &amp; &amp; D+1 &amp; &amp; D+2 \\   &amp; &amp;   &amp; &amp;   \\ \text{자금납입} &amp; &amp; &amp; &amp; \text{수익증권 매입} \\ \text{5시경과후} &amp; &amp; &amp; &amp; \text{(D+2 기준가 적용)} \end{array}</math> </div>
환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b>제4영업일(D+3)</b>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b>제8영업일(D+7)</b> 에 환매대금 지급 <div style="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begin{array}{ccc} D &amp; &amp; D+3 &amp; &amp; D+7 \\   &amp; &amp;   &amp; &amp;   \\ \text{환매청구} &amp; &amp; \text{기준가} &amp; &amp; \text{환매대금} \\ \text{(5시 이전)} &amp; &amp; \text{적용} &amp; &amp; \text{지급} \end{array}</math> </div>	- 환매청구일(D)로부터 <b>제5영업일(D+4)</b>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b>제9영업일(D+8)</b> 에 환매대금 지급 <div style="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begin{array}{ccc} D &amp; &amp; D+4 &amp; &amp; D+8 \\   &amp; &amp;   &amp; &amp;   \\ \text{환매청구} &amp; &amp; \text{기준가} &amp; &amp; \text{환매대금} \\ \text{(5시 경과후)} &amp; &amp; \text{적용} &amp; &amp; \text{지급} \end{array}</math> </div>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투자설명서 본문 1페이지 참조)**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 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을 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 용어 정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함은 HSBC 펀드서비스(주)를 말합니다.

“신탁재산”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재산을 말합니다.

“영업일”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판매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회사를 말합니다.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투자자”라 함은 장래 수익자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이라 함은 피델리티 미국 종류형 주식투자신탁-자를 말합니다.

“법령”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기타 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말합니다.

“자산운용회사”라 함은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모투자신탁”라 함은 피델리티 미국 주식투자신탁-모를 말합니다.

“기준가격”이라 함은 신탁약관에 따라 산정된 투자신탁의 수익권의 가치를 말합니다.

“신탁약관”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신탁약관 및 추후에 변경되는 신탁약관을 말합니다.

“수탁회사”라 함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말합니다.

“수익권(들)”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을 얻을 권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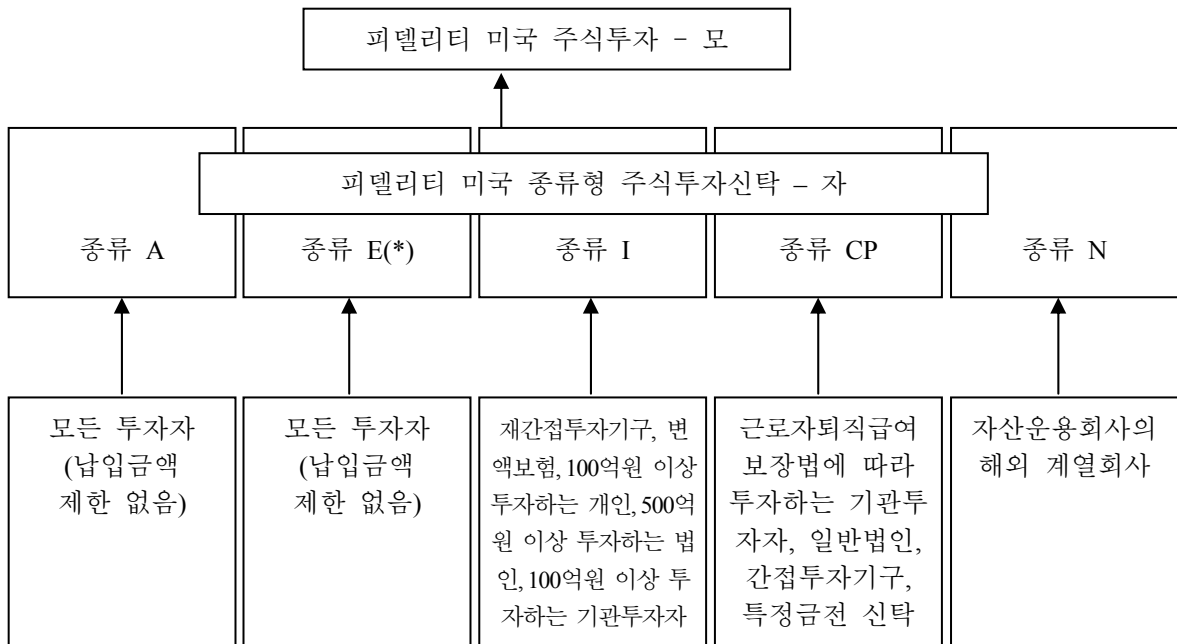
## < 본 문 >

###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 피델리티 미국 종류형 주식투자신탁-자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약관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분류 : 개방형, 추가형, 주식형, 종류형 증권간접투자기구,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4. 자산운용회사 :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 단 모투자신탁의 경우 운용·운용지사업무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츠 인터내셔널 (Fidelity Investments International)에게 위탁하였으나, 운용·운용지사업무의 위탁에 따른 책임은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에 있습니다.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 2007년 4월 9일 설정
6. 수탁고 추이  
이 투자신탁은 신규로 설정되는 투자신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7. 해지사유 : 해당사항 없음.
8. 모자펀드의 구조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 자산운용협회 표준약관 “C”클래스에 해당

## II.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 가.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미국 기업 주식 (이하 “미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며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미국 관련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 나.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은 미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미국 관련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은 미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외화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고자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100%수준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2. 주요 투자전략

#### 가. 당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 나.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모투자신탁은 미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목적 달성을 하고자 하는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종목선택에 있어 피델리티의 상향식(bottom-up)방식을 활용하며 이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본 과정이 됩니다. 모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펀더멘탈 지향적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펀더멘탈의 개선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주식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통상 계속적으로 성장 속도가 변화하거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과거 재무구조 또는 동종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

로 가격이 잘못 책정되어 있는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여타 펀더멘탈 평가를 위한 기준 중에서도 진입장벽이 높고 건전한 경영진을 가지고 있으며 유동성이 양호한 기업들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자신에게 보다 확고한 확신을 주는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주식선정 절차의 일부로서 정기적으로 회사 탐방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회사 탐방을 통하여 그 회사의 기업 지배구조, 사업 역량, 수익 수준, 재무 전략 및 장기적 성장 전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신탁자산 내 편입되는 산업군과 종목수를 분산함으로써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 위험’ 중 ‘1. 투자전략’(21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3. 주요 투자위험

당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

구분	주된 투자위험
투자원금손실 위험	투자신탁의 투자 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 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위험을 헤지하고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100% 수준이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분산투자 관련위험	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신흥시장위험	투자신탁은 전부 혹은 일부를 신흥시장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증권이 선진국 시장의 증권 보다 변동이 더 심하고,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매위험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제한 및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

구분	주된 투자위험
환매연기위험	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 중 하나입니다. 성숙한 선진 자본시장과 건실한 투자문화와 함께 유동성이 풍부하고 고도로 분산된 주식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미국 기업들이 회사 경쟁력 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등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내수기반도 크지만,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수출시장에서 얻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국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MSCI World 지수 중 미국 시장은 2006년 12월 현재 4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21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가치는 주식의 시가에 따라 결정되며, 이 투자신탁은 미국 관련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7 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중간 내지 높은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형 투자 전략에 적합하며 시장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아래에서 F 및 O 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피델리티자산운용회사는 투자위험 등급 및 해당 투자신탁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의 분류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 유형 분류]

- A. 신중한 투자전략에 적합하며 자산가치를 보호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거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B. 신중한 투자전략에 적합하며 자산가치를 보호할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또는 수반되는 위험을 제한하면서 현금/통화 투자신탁 보다는 높은 수입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며 또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C.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중간 내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현금이나 국채 보다는 높은 자본성장을 추구하거나 자본성장과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주로 적합합니다.



- D. 이 투자신탁은 피델리티 그룹이 운용하는 펀드 또는 피델리티 그룹이 운용하는 계정에 자산을 보유하는 투자자들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E. 자본성장을 추구하지만 중간 수준의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처음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나 공격적인 채권 투자자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 F. 분산투자 및 성장 지향적 투자 전략에 적합하며 시장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 G. 성장형 투자 전략에 적합하며 높은 시장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 GG. 가치 지향적 투자 전략에 적합하며, 높은 시장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 H. 성장형 투자 전략에 적합하며 매우 높은 시장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러한 투자신탁은 투자자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중 적은 부분만을 차지해야 합니다.
- I.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중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현금이나 국채 보다는 높은 자본성장을 추구하거나 자본성장과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주로 적합합니다.
- J. 자본성장을 추구하지만 중간 수준의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주식, 채권 등의 전통적인 자산 구분에 비해 자산 구분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 S. 부동산 회사들로 구성된 글로벌 포트폴리오로부터 수입과 성장을 추구하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익스포저를 다양화하고자 하는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적합합니다.
- X. 이머징마켓은 선진시장 보다 높은 수입과 성장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머징마켓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에 대한 투자는 투자기간이 장기적인 투자자들에게만 적합합니다. 이머징마켓 채권은 투자전략의 다양화를 위한 일환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투자대상이지만 위험 회피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투자위험 분류]

- K. 매우 낮은 위험: 투자신탁의 가치는 현금 투자자산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됩니다.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현금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7등급)

- L. 낮은 위험: 투자신탁의 가치는 현금, 국채 및/또는 회사채 투자자산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됩니다.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6등급)
- M. 중간-낮은 위험: 투자신탁의 가치는 국채와 회사채 및 주식 (주식시장) 투자자산(해당하는 경우)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됩니다.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등급)
- V. 중간 내지 낮은 위험: 투자신탁의 가치는 국채와 회사채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됩니다.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등급)
- U. 중간 위험: 이러한 종류의 투자신탁의 가치는 국채 및 회사채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됩니다.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등급)
- N. 중간 위험: 투자신탁의 가치는 고도로 분산화되어 있거나 또는 국채나 회사채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주식 투자자산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됩니다.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투자신탁은 “주된(mainstream)” 투자신탁에 속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정 시장에 대한 투자자 익스포저의 핵심을 구성합니다. (4등급)
- O. 중간 내지 높은 위험: 이러한 종류의 투자신탁의 가치는 투자신탁의 기준통화 이외 통화로 표시된 주식을 포함하는 기초 주식 투자자산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되며, 이에 따라 환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투자신탁은 대규모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주된(mainstream) 투자신탁 또는 핵심형 투자신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3등급)
- P. 높은 위험: 이러한 종류의 투자신탁의 가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국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위험 및 시장변동성이 수반되는 주식 투자자산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됩니다. 그러한 투자신탁은 다른 투자신탁들에 비해 공격적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등급)
- R. 매우 높은 위험: 이러한 종류의 투자신탁의 가치는 환위험 익스포저로 인한 높은 변동성

을 수반하거나 혹은 소규모 회사나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또는 시장 업종에 대한 독점적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수반하는 기초 주식 투자자산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됩니다.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등급)

T. 중간 내지 높은 위험: 이러한 종류의 투자신탁의 가치는 환위험을 발생시키는 타 국가의 주식을 포함하는 주식 투자자산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됩니다.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투자신탁은 대규모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주된(mainstream) 투자신탁 또는 핵심 투자신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1등급)

\* 위 등급은 오직 피델리티 그룹의 펀드 전체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는 단지 안내지침에 불과하며, 운용회사, 자산 유형, 관련 시장 및 통화에 따른 과거 운용실적에 관한 피델리티 그룹의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약관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당해 종류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약관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자산운용회사는 통보 받은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일 공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자신들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가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결

정되며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모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단,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증권투자신탁으로서 각 종류 수익증권간 부과되는 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각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 경력 및 이력
장성문	투자서비스 담당 이사	<p>[주요 경력]</p> <p>주식운용 및 리서치            - LG투신운용 (8개월)            - 메리츠투자자문 (4년)</p> <p>보험사 자산운용            - 삼성화재 (2년)</p> <p>[학력 및 기타 이력]</p> <p>국제재무분석사(CFA)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존스홉킨스 대학 재무학 석사</p>

※ 상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 현재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수와 운용자산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I.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38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투자신탁은 최고 100%까지 모두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본문 제3부 I. 2. 나. 3) 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모두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였으며 실제 모두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현재 아리스 바티스)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7. 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이 투자신탁은 신규로 설정되는 투자신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이 투자신탁은 신규로 설정되는 투자신탁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가. 당해 투자신탁

구분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고
		종류 수익증권	A	E	I	CP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	선취판매 수수료	1.2%	-	-	-	-	수익증권 매입시	
	환매 수수료 <sup>1)</sup>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대금 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펀드에 반환함.
	합계	환매수수료 (적용되는 경우)와 선취판매수수료의 합						

1)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약관 제21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합니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나. 모투자신탁

구분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고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	선(후)취 판매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여기서 “수익자”란 모투자신탁의 수익 증권을 보유하는 자투자신탁을 말함
	환매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분 류	지급비율					산정 방식	지급시기	비고
	종류 A	종류 E	종류 I	종류 CP	종류 N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0.80%	연 0.80%	연 0.80%	연 0.80%	연 0.80%	매일 발생	분기별로 지급됨	순자산총액에 기초함
판매회사 보수	연 1.00%	연 1.80%	연 0.10%	연 0.50%	없음	매일 발생	분기별로 지급됨	순자산총액에 기초함
수탁회사 보수	연 0.04%	연 0.04%	연 0.04%	연 0.04%	연 0.04%	매일 발생	분기별로 지급됨	순자산총액에 기초함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sup>1)</sup>	연 0.028%	연 0.028%	연 0.028%	연 0.028%	연 0.028%	매일 발생	분기별로 지급됨	순자산총액에 기초함
기타 비용 <sup>2)</sup>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지급됨	순자산총액에 기초함
총 보수·비용 비율 <sup>3)</sup>	연 1.868%	연 2.668%	연 0.968%	연 1.368%	연 0.868%			순자산총액에 기초함

- 1)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는 최고 0.028%임. 그러나,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자산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는 낮아질 수 있음.
- 2) 기타 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됨.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신규로 설정되는 투자신탁이므로 기타비용 추정치가 존재하지 아니함.
- 3) 이 투자신탁은 신규로 설정되어 기타비용 수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총 보수·비용 비율은 기타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함. 또한 총보수·비용비율 산정시 모두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음

#### 나.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위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및 투자신탁과 관련한 납세신고서 작성비용
2.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3.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4.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의 고의, 과실, 신탁약관 위반 없이 투자신탁 관련 소송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을 포함)
5.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다. 모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분류	지급비율	산정방식	지급시기	비고
자산운용회사 보수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 보수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비용 <sup>1)</sup>	실비		사유발생시 지출	순자산총액에 기초함

1) 기타 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됨.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신규로 설정되는 투자신탁이므로 기타비용 추정치가 존재하지 아니함.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예상비용은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비용은 실제 운용비용 및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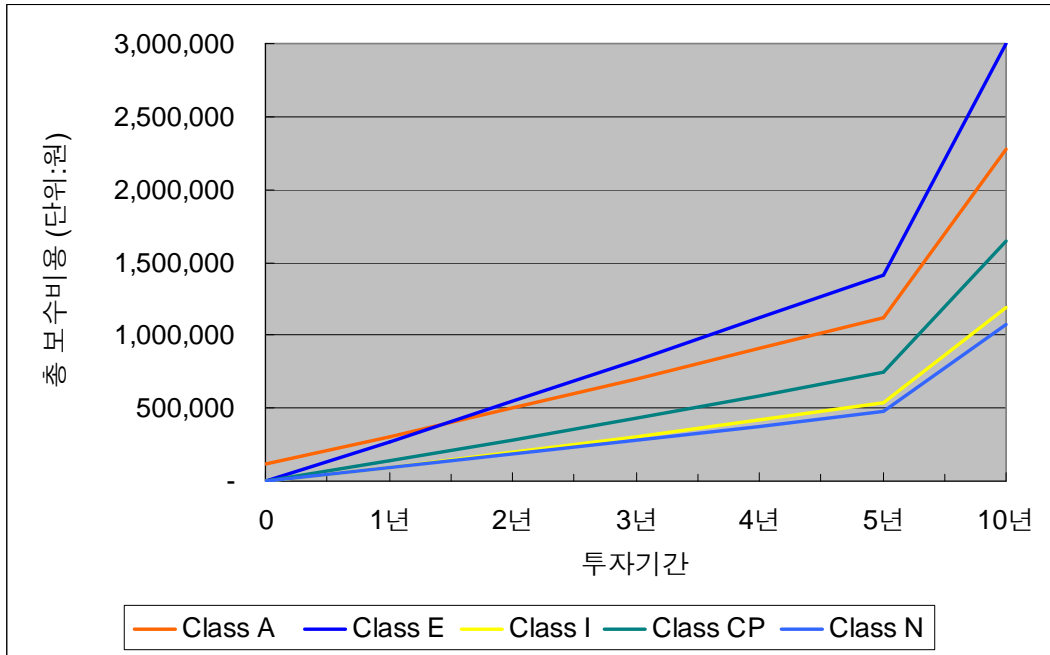
(단위:원)

	종류	환매시점	최초투자 금액	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	4년 경과	5년 경과	10년 경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sup>1)</sup>	종류 A	매수금액	10,000,000	10,224,819	10,537,218	10,859,163	11,190,943	11,532,861	13,405,680	
		선취판매수수료	118,577							
		총보수비용			(187,918)	(381,578)	(581,155)	(786,829)	(998,787)	(2,159,767)
		순투자금액	9,881,423 <sup>3)</sup>	10,224,819	10,537,218	10,859,163	11,190,943	11,532,861	13,405,680	
	종류 E	매수금액	10,000,000	10,264,911	10,494,086	10,728,377	10,967,900	11,212,769	12,521,605	
		총보수비용			(270,617)	(547,276)	(830,112)	(1,119,263)	(1,414,869)	(2,994,891)
		순투자금액	10,000,000	10,264,911	10,494,086	10,728,377	10,967,900	11,212,769	12,521,605	
	종류 I	매수금액	10,000,000	10,441,176	10,857,580	11,290,591	11,740,871	12,209,108	14,845,748	
		총보수비용			(98,958)	(201,863)	(308,872)	(420,149)	(535,863)	(1,187,450)
		순투자금액	10,000,000	10,441,176	10,857,580	11,290,591	11,740,871	12,209,108	14,845,748	
	종류 CP	매수금액	10,000,000	10,399,454	10,770,982	11,155,783	11,554,331	11,967,118	14,263,082	
		총보수비용			(139,592)	(284,171)	(433,916)	(589,010)	(749,645)	(1,643,114)
		순투자금액	10,000,000	10,399,454	10,770,982	11,155,783	11,554,331	11,967,118	14,263,082	
	종류 N	매수금액	10,000,000	10,451,630	10,879,334	11,324,540	11,787,964	12,270,353	14,995,065	
		총보수비용			(88,776)	(181,186)	(277,377)	(377,504)	(481,729)	(1,070,429)
		순투자금액	10,000,000	10,451,630	10,879,334	11,324,540	11,787,964	12,270,353	14,995,065	
		순차액(E-A) <sup>2)</sup>		118,577	40,092	(43,132)	(130,785)	(223,044)	(320,091)	(884,075)

-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예상비용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 순차액은 종류 E 수익증권과 종류 A 수익증권간의 수익을 참고목적으로 비교한 수치입니다.
- 10,000,000원 투자시 선취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최초투자금액입니다.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종류별 총보수 비용 추이 및 총보수 비용이 일치 하는 시점의 선형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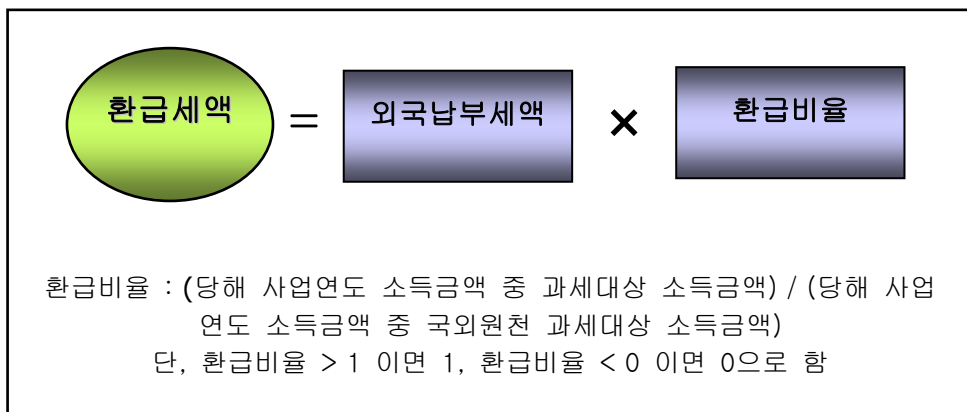


###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이 때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14%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함). 다만,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익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특례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 및 모투자신탁이 이와 같은 매매·평가 손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 및 모투자신탁이 이와 같은 매매·평가 손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

####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주: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 1. 수익증권의 매입

가. 투자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영업일에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업일의 오후 5시까지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해당 영업일에 처리되며, 영업일의 오후 5시 경과 이후에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다음 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매수청구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가 소정의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 또는 결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최소매입금액: 이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자산운용회사가 최소매입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수익증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 종류 A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 종류 E 수익증권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 종류 I 수익증권 : 재간접투자기구, 변액보험,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 종류 CP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간접투자기구, 특정금전신탁
- 종류 N 수익증권 : 모투자신탁의 초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자산운용회사의 해외계열회사가 투자하는 경우

라. 투자자가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

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판매가격은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오후 5시 경과 이후에 수령한 매입 주문 및 자금납입은 판매회사가 주문을 실제로 수령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처리됩니다.

마.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29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2. 환매

### 가. 수익증권의 환매

(1)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당해 투자신탁 약관, 동 설명서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각 영업일에 오후 5시까지 수익증권 환매 주문을 수령합니다. 판매회사가 오후 5시 경과 이후에 수익증권 환매요청을 수령한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그밖에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하는 사유(“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는 법 제6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는 법 제62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자산운용회사는 모두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환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두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5)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통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익증권의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자가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청구한 날(판매회사의 영업일임. 당일 포함)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환매대금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포함)로부터 제8영업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환매대금은 관련되는 환매수수료 및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오후 5시 경과 후에 수령한 환매청구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실제로 청구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처리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실제로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제9영업일에 지급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약관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각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포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환매 연기, 부분환매, 환매제한 등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30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3. 이익 등의 분배

이익분배: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수익자에게 분배하되, 수익자는, 수익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는데 사용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신탁약관 제14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이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당일포함) 제9영업일 전에 판매회사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33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 1. 투자전략

##### 가.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 나.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모투자신탁은 미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목적 달성하고자 하는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종목선택에 있어 피델리티의 상향식(bottom-up)방식을 활용하며 이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본 과정이 됩니다. 모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펀더멘탈 지향적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펀더멘탈의 개선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주식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통상 계속적으로 성장 속도가 변화하거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과거 재무구조 또는 동종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잘못 책정되어 있는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여타 펀더멘탈 평가를 위한 기준 중에서도 진입장벽이 높고 건전한 경영진을 가지고 있으며 유동성이 양호한 기업들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자신에게 보다 확고한 확신을 주는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주식선정 절차의 일부로서 정기적으로 회사 탐방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회사 탐방을 통하여 그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사업 역량, 수익 수준, 재무 전략 및 장기적 성장 전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신탁 자산 내 편입되는 산업군과 종목수를 분산함으로써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

#### 2. 투자위험

구 분	주된 투자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투자신탁의 투자 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 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투자자들을 제외한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투자신탁채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채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구 분	주된 투자위험
	<p>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유가증권, 등급이 낮은 유가증권 및 이에 상당하는 등급이 없는 유가증권은 등급이 높은 유가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p>
환율변동 위험	<p>이 투자신탁은 환율위험을 헤지하고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100% 수준이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분산투자 관련위험	<p>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거래비용이 다른 국가에서 보다 더 높고 유동성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현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 또는 투자형태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특히 대규모 거래)라고 할지라도 대형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투자신탁의 운용비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투자신탁 선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어느 한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적어지는 대신에 많은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권 가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신흥시장위험	<p>투자신탁은 전부 혹은 일부를 신흥시장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증권이 선진국 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이 더 심하고,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몇몇 신흥시장의 경제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전세계의 상품가격에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의 국가에 있어서는 특히 해당국의 경제적 여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이러한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한다 하더라도 각 투자신탁 및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은 이러한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p>
유동성위험	<p>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파생상품투자위험	<p>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옵션매도로 인한 손실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는 투자신탁재산에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p>
환매위험	<p>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p>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p>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 중 하나입니다. 성숙한 선진 자본시장과 건실한 투자문화와 함께 유동성이 풍부하고 고도로 분산된 주식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미국 기업들이 회사 경쟁력 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등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내수기반도 크지만,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수출시장에서 얻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국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MSCI World 지수 중 미국 시장은 2006년 12월 현재 4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이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상품은 예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과 달리 투자자들은 한국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탁재산은 수탁회사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 3. 투자대상

#### 가. 당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의 상품에 한함)의 방법으로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합니다.

1. 아래 제2호에 투자하는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재산은 피델리티 미국 주식투자신탁-모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위 3. 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위 3. 가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 외국주식	60% 이상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외화증권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외국주식”)
2) 미국관련 주식	60% 이상	미국 기업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 (“미국 관련 주식”)
3) 외국채권	40% 이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외화증권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 (“외국채권”).
4) 외국어음	40% 이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외화증권으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의 성질을 구비한 것 (“외국어음”)
5) 외국자산 유동화채권	40% 이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외화증권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 (“외국 자산유동화채권”)
6) 국내외의 금리스왑	국내외 금리스왑거래. 단,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7)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 기준 15% 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또는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주식 및 외국채권 관련 파생상품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8) 주식및채권관련	위험평가액 기준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 상응하는 주식 및 채권 또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장외파생상품	10% 이하(장내파생상품 포함)	는 외국주식 및 외국채권과 관련되는 장외파생상품 (“주식 및채권관련장외파생상품”)
9) 외국수익증권 등	5% 이하 다만,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에는 자산총액의 30% 까지, 외국 간접 투자증권에 투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0% 까지 투자가능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또는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외화증권으로서 신탁업법에 의 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 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성 질을 구비한 것 (“외국수익증권등”)
10) 투자증권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11)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12) 투자증권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3) 기타	<p>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li> <li>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정됨).</li> </ol> <p>추가로, 자산운용회사는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p>	
<p>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내지 6)호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li> <li>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됨)</li> <li>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됨)</li> <li>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li> <li>5. 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1)호 내지 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된 경우</li> </ol>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4. 투자제한

##### 가. 당해 투자신탁

-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나. 모투자신탁

- (1) 자산운용회사는 모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1.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및\_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별로 매일의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합니다.

3.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5.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6.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모투자신탁 재산 총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7. 모두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
  8. 모두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2) 모두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 모두자신탁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모두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 3.나.의 표의 7)호 내지 12)호의 투자한도 및 4.나.(1)의 1호 내지 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모두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3.나. 7) 및 4.나.(1).2.호의 본문 및 4.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II. 자산의 평가

### 1) 당해 투자신탁

가.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코스닥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산정됩니다.

### 2) 모두자신탁

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합니다.

- (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코스닥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최종시가

- (2) 비상장(코스닥상장 포함)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3) 장내파생상품: 법 제2조 8호에 규정된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 (4)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합니다):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5) 비상장채권 (위 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합니다):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6) 외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7) 자산운용회사가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외화를 한국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합니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시한 환율(외국의 뉴스통신사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외국환중개회사에 제공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그 환율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환 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8) 기타자산: 아래와 같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
-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코스닥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산정됩니다.
  -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 가격. 다만, 외국 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

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가격으로 산정됩니다.

-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비상장 외화표시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외화 표시증권에 적용되는 환율을 결정함에 있어, 외화표시상장주식 및 외화표시상장 채권에 적용되는 환율의 결정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거래	<p>피델리티는 펀드, 계정 또는 트레이딩 데스크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최적의 거래체결 방침(best execution policy)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개회사와 일반적인 거래관계를 체결하기에 앞서 피델리티는 중개회사에 대하여 독자적인 리서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유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거래 체결을 수행하게 될 중개회사를 선정하고 최적의 거래체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델리티는 다음과 같은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합니다.</p> <p>중개회사 선정시 고려되는 핵심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 규모와 종류</li> <li>• 유동성</li> <li>• 거래 효율성</li> <li>• 영업/운영 현황(capital utilization)</li> <li>• 수수료율 또는 스프레드의 적정성</li> <li>• 결제청산(clearance) 또는 결제능력</li> <li>• 중개회사의 신용도</li> </ul>
장내파생상품 거래	위와 같음

###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가. 과도한 매매의 제한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목표로 설정 및 운용되며 과도한 매매를 지양합니다. 투자재산에 대한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전략을 방해하고 운용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신탁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시차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자, 또는 당해 투자자가 단기매매나 과도한 매매 패턴을 보이거나 이 투

자신탁의 운용에 방해가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투자자들의 수익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0일미만 동안 보유하는 거래는 과도한 매매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과도한 매매를 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를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거래내역 및 공동으로 관리되는 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2. 환매관련 유의사항

### 가.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기준일의 제6영업일(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전의 날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나.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1)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현저한 거래부진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나.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 환매가 연기된 경우

다. 전쟁, 홍수, 폭풍, 테러 또는 기타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어느 영업일에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자산운용회사는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이내에 환매연기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환매연기일로부터 6주 이내에 신탁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항 2.호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릅니다.).

-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 3.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 (3)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4)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5)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신탁약관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6)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

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다. 환매연기 기간 동안 매수 및 환매신청의 처리

상기 라.에 따른 환매연기 이후, 환매연기 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제1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상기 라.에 따른 환매연기 기간 동안에는 신탁약관에 따른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라.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신탁약관에서 정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3) 자산운용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4) 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신탁약관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5)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의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3. 분배관련 유의사항

#### 가.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시 상환금등의 지급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등을 공제한 후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합니다. 판매회사는 해당 모든 조세 및 환매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수탁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에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나.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이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I. 자산운용회사

####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100-101 대한민국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빌딩 4층, 전화번호: 3783-0901
회사연혁	2002년 8월 설립되었으며(설립당시 상호는 "피델리티 투자자문 코리아 주식회사"임), 2003년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2004년 12월 8일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12월 10일에 자산운용업인가를 받아 그 상호를 "피델리티 투자자문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2006. 12. 31 현

	<p>재 자본금은 100억원이며 Fidelity International Limited 가 주식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는 한국의 일반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투자 신탁상품, 자산운용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산운용에 대한 Fidelity Investments 의 폭넓은 해외 경험을 충분히 이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p>
--	--

**[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의 개요]**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리미티드는 북미지역을 제외한 세계의 주요 시장에서 개인 및 기관 투자자에게 자산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0여년 동안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리미티드는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말 현재 2,766억 달러에 해당하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리미티드는 버뮤다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3개국에 지사를, 8개국에 리서치 및 인베스트먼트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리미티드는 비상장 기업으로서 독립성을 갖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수한 상품을 개발,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리미티드의 성공의 핵심에는 자금운용에 대한 접근이 있습니다. 실험되고 입증된 명확한 투자철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자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투자과정과 접근은 과거실적과 많은 수상경험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리미티드의 뮤추얼 펀드 사업은 직접판매 또는 판매대행회사를 통해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리미티드가 현지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현지 투자자들에게 투자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업연금사업부는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몇몇 시장에서는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69	1969	1973	1979	1981	1982
버뮤다에서 Fidelity International 설립	동경사무소 개설	런던사무소 개설	영국 단위형 신탁회사 설립	홍콩사무소 개설	기관투자자용 영국 연금 사업 개시

1986	1990	1991	1992	1994	1996	1997
대만사무소 개설	네덜란드 사무소 개설	룩셈부르크 사무소 개설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개설	파리 사무소 개설	쥐리히 및 시드니 사무소 개설	스톡홀름 사무소 개설

1998	1999	2000	2001	2003	2004
마드리드	FIL 자산운	두바이, 밀라노, 비엔나,	델리 사무소	싱가포르 사무소	중국 사무소 개설

사무소 개설	US\$ 1,000억원에 달함. 한국 지점 사무소 개설	제네바 및 바르셀로나 사무소 개설. Fidelity Investor Centre 가 런던에서 새로운 사무소 개설	개설	개설 한국 투자자문회사 설립	한국자산운용회사 설립
--------	---	--	----	--------------------------	----------------

[Fidelity Investments 의 수상내역]

2006	유럽 <스탠더드 앤 푸어스> : 3년 연속 운용 그룹 부문 최상급 영국 <리퍼상> : 3년 연속 채권 운용 그룹 부문 최상급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 : <2005년 올해의 펀드 매니저>
2005	유럽 <스탠더드 앤 푸어스> : 2년 연속 운용 그룹 부문 최상급 영국 <리퍼상> : 2년 연속 채권 운용 그룹 부문 최상급 영국 머니 오브저버 (Money Observer) 상 : 모든 펀드 부문 최상급, 지난 10년간 5회 수여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 : <2004년 올해의 펀드 매니저>
2004	홍콩 -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2003년도 올해의 펀드매니저, 테크놀로지 (3년 이상), 유럽 성장형 (5 & 10 년 이상) 및 일본 (10년 이상) 펀드 1위. 홍콩 - 2004년도 리퍼(Lipper) 상, 주식형 유럽 및 혼합 자산 유럽 분야 1위 싱가포르 - 스탠다드 앤 푸어스 2004년도 투자상, 주식형 유럽 (3 & 5년 이상), 주식형 미국 (3 & 5년 이상), TMT 글로벌 (3년 이상) 및 자산 배정 - 유럽 뉴트럴 (3년 이상) 분야에서 1위
2003	로이터스 기관투자자 조사, 아시아 및 유럽 주식형 전반적인 회사 등급(매수)에서 1위. Global Investor Annual Awards, 일본 주식형 1위, 하이일드 채권형 2위
2002	Investment Week, “올해의 그룹상” 수상
2001	로이터 조사 - 최고의 펀드 운영 그룹, 유럽 대형주, 유럽 소형주, 영국 대형주, 영국 소형주, 미국 대형주
2000	로이터 조사 - 최고의 펀드 운영 그룹, 유럽 대형주, 유럽 소형주, 글로벌 이머징 마켓: 아시아, 글로벌 이머징 마켓: 라틴 아 메리카, 홍콩 & 중국 주식, 영국 대형주, 영국 소형주, 미국 대형주, 미국 중소형주
2000	로이터 조사 - 최고의 개인 펀드매니저, 홍콩 & 중국 - Stephen Ma 글로벌 이머징 마켓: 아시아 - 팀 미국 중소형주 - 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 제91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한편,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상의 이해관계인과 거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간접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법 제9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주요 업무

### 가. 자산운용업무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나. 업무위탁

- 1)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로 HSBC 펀드서비스(주)를 선임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및 결정, 이 투자신탁의 활동과 관련한 장부, 기록 및 명세서의 보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장부 등을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의 열람을 위해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제1부 III. 2.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에서 지급됩니다.
- 2)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업무 위탁:**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3) **계열회사의 활용:**

(가) 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 위탁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한 운용 및 운용지시에 관한 업무를 피델리티 인베스트먼츠 인터내셔널 (Fidelity Investments International)(“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라 합니다)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1979년 설립되어 영국 금융청으로부터 자산운용업무의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Fidelity Investments 의 영국 및 유럽 지역에 대한 조사, 투자 및 거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내에서 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할 자산운용자는 Aris Vatis 입니다.

성명	나이	주요경력	협회 등록번호	학력
----	----	------	------------	----

Aris Vatis	39	2006-현재 유럽 Fidelity International 미국/유럽. 글로벌 주식부 포트폴리오 매니저  1998-2006 Pictet Asset Management 미국 및 글로벌 주식 수석 포트폴리 오 매니저  1993-1998 Dresdner RCM Global Investors 미국 및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	해당없음	버팔로 소재 뉴욕대학 MBA  Athens 경영대 학 학사
------------	----	--	------	---

[운용전문인력의 기타 운용현황]

성명	운용 구분	운용펀드수	운용자산
Aris Vatis	단독	2	미화 27.8억 달러
	공동	-	-
계		2	미화 27.8억 달러

\* 위 운용펀드수는 일반투자자용 펀드, 기관투자자용 펀드, 개별 일임계좌를 포함하고 있음.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따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1979년 설립된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는 2006년말 현재 해외자산운용팀에 소속된 피델리티의 자산운용전문인력 366명 중 193명을 포함한, 총 2,680명의 인원이 일하고 있으며,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최고투자관리자인 Mr. Michael Gordon 이 이끌고 있습니다. 2006년 말 현재 미화 2,057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사실에도 불구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자산운용회사에게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보수는 자산운용회사 보수에서 지급됩니다.

다. 의무 및 책임

- 1)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2) **자산운용회사의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이 투자신탁의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2006.3.31	2005.3.31	항목	2006.3.31	2005.3.31
유동자산	12,316	11,244	영업수익	15,504	11,482
고정자산	3,705	3,013	영업비용	13,713	10,826
<b>자산총계</b>	<b>16,021</b>	<b>14,257</b>	<b>영업이익</b>	<b>1,791</b>	<b>656</b>
유동부채	4,333	3,929	영업외수익	8	5
고정부채	333	96	영업외비용	293	0
<b>부채총계</b>	<b>4,666</b>	<b>4,025</b>	<b>경상이익</b>	<b>1,506</b>	<b>661</b>
자본금	10,000	10,000	법인세비용	384	253
이익잉여금	1,354	232	<b>당기순이익</b>	<b>1,122</b>	<b>408</b>
<b>자본총계</b>	<b>11,354</b>	<b>10,232</b>			
<b>부채 및 자본 총계</b>	<b>16,021</b>	<b>14,257</b>			

#### 4. 운용자산 규모

(2006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억좌)

종 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	실물자산	총 계
수탁고	5,935	243	191					4,052		10,421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 명	나이	직 위	운용현황		주요 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 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장성문	38	투자 서비스 담당 이사	14개	38,414억원	[주요 경력]  주식운용 및 리서치 - LG투신운용 (8개월) - 메리츠투자자문 (4년)  보험사 자산운용 - 삼성화재 (2년)  [학력 및 기타 이력]  국제재무분석사(CFA)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 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존스홉킨스 대학 재무학 석사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에 의거, 본 투자신탁은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제3부 1. 2. 나. 3) 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모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였습니다. 실제 모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현재 아리스 바티스)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II. 판매회사

### 1. 판매회사의 개요

####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 2001.11 한국주택은행과 국민은행 합병
- 2001.11 증권거래소 상장
- 2002.8 총자산 200조 돌파
- 2002.9 3년 연속 한국 최우수은행 선정(The Banker 지 9월호)
- 2003.6 S&P 아시아 50 지수 편입
- 2003.9 KB 방카슈랑스 시행
- 2004.5 은행권 최초 투신상품 판매 10조 돌파
- 2004.7 4년 연속 한국 최우수은행 선정 (Euromoney)

#### [한국의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 1967.1 한국의환은행 창립
- 1977.5 증권매매업무 취급
- 1978.4 국내최초 신용카드(비자카드) 업무 취급개시
- 1985.3 신탁업무 취급 개시
- 1987.12 서울올림픽 공인은행
- 1988.9 신탁수신고 1조원 돌파
- 1998.7 독일 Commerzbank 의 자본 및 경영 참여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 1999.1 한빛은행 설립
- 2001.4 우리금융그룹 출범
- 2002.5 우리은행으로 행명 변경
- 2004.8 우리은행 상반기 순익 5,909억원으로 업계 최고 시현
- 2004.11 우리금융, LG 투자증권 자회사로 편입

**[하나대투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1968.12 한국투자공사 설립
- 1970.5 한국투자공사 증권투자신탁업무 시작
- 1977.2 대한투자신탁 영업 개시
- 1999.10 금융감독위원회에 판매회사 등록
- 2000.6 증권사 전환으로 대한투자신탁증권(주)로 사명 변경
- 2003.6 사명변경 (대한투자신탁증권(주) -> 대한투자증권(주))
- 2007.7 사명변경 (대한투자증권(주) -> 하나대투증권(주))

**[교보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 1949.11 회사설립 (구 대한증권)
- 1962.11 증권업 허가
- 1994.4 교보증권으로 상호 변경
- 1996.7 교보투자신탁운용(주) 설립
- 1999.11 코스닥시장 등록
- 2001.12 CI 변경
- 2002.7 증권거래소 상장

**[동부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번지]**

- 1982.12 국민투자금융(주) 설립
- 1988.9 동부투자금융(주)로 상호변경
- 1991.6 증권업전환 인가 취득
- 1991.7 동부증권(주)로 상호변경 및 증권업 영업 개시
- 1997.1 동부투자신탁운용(주) 설립
- 2000.12 뮤추얼펀드 판매회사 인가 취득
- 2003.11 투자일임업 인가 취득
- 2004.5 (주)갯모어증권중개 인수 합병



[메리츠종금,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5층]

- 1977.7 대한종금(주) 설립
- 1977.9 한불종금(주)로 상호변경
- 1977.11 한불종합금융(주)로 상호변경
- 2007.1 사명 변경(한불종합금융->메리츠종합금융)

[키움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14층]

- 2000.1 키움닷컴증권(주) 법인설립
- 2000.3 증권회사 설립 (본)허가 승인
- 2000.5 온라인 위탁매매 개시
- 2004.4 코스닥시장 등록
- 2004.5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인가
- 2005.6 본점 소재지 이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 2005.8 자본금 변경 (613억원)

[한국씨티은행, 서울시 중구 다동 39번지]

- 2004.2 씨티그룹 한미은행 투자(인수)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04.3 한미은행 상장주식 공개매수 공고
- 2004.7 한미은행 임시주총에서 상장 폐지 결의
- 2004.9 한미은행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 2004.9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씨티은행 내인가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01-1]

- 1971.6 한국투자금융(주) 설립
- 1991.7 은행으로 전환
- 1996.11 런던주식시장 상장
- 1999.1 합병 하나은행 출범
- 2000.4 Allianz Group 최대 주주로 지분 참여
- 2000.12 총 수신 40조원 달성
- 2001.3 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주) 설립
- 2002.12 국내 3위 규모 통합 하나은행 출범
- 2003.2 하나생명보험(주) 출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 1929.7 조선저축은행으로 창립
- 1950.5 한국저축은행으로 행명 변경
- 1958.12 제일은행으로 행명 변경
- 1993.12 국내은행 최초로 3개년 연속 경영평가 1위
- 2000.1 해외투자 유치-뉴브리지캐피탈 5000억원 출자

**[동양종합금융증권,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5 동양종합금융증권빌딩]**

- 1962.6 회사설립
- 2000.4 '99 코스닥등록 공모실적 업계1위 (금감원 자료)
- 2000.12 업계 최초 외평채 판매 개시 및 2000년 판매실적 1위
- 2001.11 동양증권-동양현대증권 합병,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출범
- 2002.11 Wealth Management 사업 본격실시 - 골드센터 오픈
- 2002.12 금융상품 수신고 10조원 돌파

**[굿모닝신한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

- 1973.4 효성증권 설립
- 1983.12 상호변경 (효성증권->쌍용투자증권)
- 1984.5 해외증권업 허가
- 1999.5 굿모닝증권으로 상호 변경
- 2000.1 온라인트레이딩 전문브랜드 goodi 출범
- 2001.3 굿모닝투자신탁운용 설립
- 2002.8 굿모닝신한증권 출범
- 2003.12 굿모닝 골드랩 출시
- 2004.3 업계최초 대만증권거래소 시세 제공

**[대구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18번지]**

- 1967.10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설립
- 2002.5 납입자본금 금 6,606억원 (수권자본금 15,000억원)
- 2002.8 금융감독원 전국은행 민원 평가 1위 수상
- 2003.10 경영혁신대상수상(한국품질경영학회, 포브스코리아주관)

**[유진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유진투자증권빌딩]**

- 1954.5 서울증권 주식회사 설립 (설립자본금 100만원),
- 1987.8 기업공개 (증자후 150억원)및주식상장
- 1991.9 기업인수합병 (M&A) 주선업무 인가
- 1994.4 본점이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 1996.5 수익증권 판매업무 개시
- 2003.9 방카슈랑스 업무 등록
- 2006.4 한일투자신탁운용(주)를 유진투자증권 HTS 자산운용(주)로 상호변경  
제일선물(주)를 유진투자증권 HTS 선물(주)로 상호변경
- 2006.12 강찬수 대표이사에서 유진기업(주)로 최대주주 변경
- 2007.3 유진그룹 계열회사로 편입

**[NH 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농협문화복지재단빌딩]**

- 2006.1 농협중앙회로 대주주 변경
- 2006.2 NH 투자증권(주)로 상호변경 (舊 세종증권)
- 2006.7 유상증자 실시 (자본금 1,267억 → 2,537억)
- 2006.8 SRI 펀드 출시 (뉴아너스 SRI 펀드)
- 2006.10 업계최초 한우펀드 출시
- 2007.4 사옥 이전(대치동 →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우리투자증권 빌딩]**

- 1969.1 한보증권 설립
- 1983.11 럭키증권으로 상호변경
- 1995.3 LG 증권으로 상호변경
- 1999.10 LG 투자증권으로 상호변경
- 2003.1 Wealth Management Center 오픈
- 2004.5 LG 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
- 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회사로 편입
- 2005.4 우리투자증권 출범

**[한화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 1962.7 성도증권(주) 설립
- 1977.11 상호변경 (제일증권)
- 1996.10 한화증권으로 상호변경
- 2001.3 한화증권 랩어카운트 상품(EZ-WRAP) 판매 개시
- 2003.3 중국 상하이 사무소 개설

- 2004.1 르네상스지점 개설 (PB 복합점포)
- 2004.6 우체국과 연계계좌 서비스 개시

**[삼성증권,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 종로타워빌딩]**

- 1992.11 삼성증권 출범
- 1996.11 수익증권 위탁판매 실시
- 1998.12 국내최초 뮤추얼펀드 판매 개시
- 1999.2 IMF 이후 증권업계 최초 신용평가 A 등급 회복(한국신용평가사)
- 2000.12 삼성투자신탁증권과 합병
- 2001.4 종합자산관리계좌 “FN Honors Club” 판매고 업계 최초 1조 돌파
- 2003.10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개시
- 2004.11 제1회 서울경제 대한민국 증권대상 대상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상)

**[현대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현대증권]**

- 1962.6 증권업 허가
- 1986 상호를 현대증권주식회사로 변경
- 1997 외국투자신탁증권 국내판매 대행업무에 대한 재경원 인가
- 1999.3 Buy Korea 출시
- 2001 투자자문업 등록
- 2004.5 일임형 랩 등록
- 2004.9 현재 자본금 6,989억 원

**[미래에셋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미래에셋빌딩]**

- 1999.12. 미래에셋증권(주) 법인설립(납입자본금 500억)
- 2000.1 증권회사설립에 관한 본인가 획득, 증권영업개시
- 2000.9 “미래에셋증권”으로 사명 변경(구 “E\*미래에셋증권”)
- 2001.3 금융상품 판매 잔고 2조원 돌파(업계최단기간)
- 2003.12 홍콩법인 (Miraeasset Global Investment Management Ltd)설립
- 2004.9 싱가포르 법인(Miraeasset Global Investment Management (ASIA) PTE. Ltd) 설립
- 2005.2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 해외펀드 출시(싱가포르 현지법인 운용)
- 2006. 매경 증권인상(대상), 다산금융상(금상), 한국 CEO 그랑프리상,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기업상 등 수상

**[대우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 1970.9 동양증권(주) 설립

- 1983.10 상호변경 (대우증권주식회사)
- 1999.10 대우그룹에서 계열 분리
- 2000.5 BESTez.COM 오픈
- 2000.5 한국산업은행으로 최대주주 변경
- 2001.2 종합자산관리 ‘플랜마스터’ 개시

**[ING은행 서울지점,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26 흥국생명빌딩 15층]**

- 1991.10 ING 은행 서울지점 설립
- 2007.8 판매회사 등록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증권 서울지점,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84번지 서울 파이낸스센터 29층]**

- 1992.7 메릴린치 증권 설립
- 2000.9 금융감독위원회에 판매사 등록

**2. 판매업무에 관한 사항**

**가. 판매회사의 업무**

- ① 간접투자증권의 모집 및 매출
- ②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 ③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 ④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 ⑤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제신고 접수 및 처리
- ⑥ 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나. 위탁판매계약체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와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투자설명서 제공**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제공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표준신탁약관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의무 및 책임

#### 가. 판매회사의 책임

- ①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판매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매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나.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III. 수탁회사

#### 1. 수탁회사의 개요

상호: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우편번호 100-161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HSBC 빌딩 5층  
전화:           2004-0000

#### [한국에서의 HSBC 의 연혁]

1982	HSBC 부산지점 개설 (1920년대 대표사무소 폐쇄 후)
1984	HSBC 서울지점 개설
1986	Marine Midland Bank 서울지점 취득
1988	Midland Bank 서울지점 취득
1998	개인금융서비스 시작, 삼성지점 개설
1999	압구정 지점 개설
2000.1.	개인금융센터 개설

- 2000.8.       분당지점 개설
- 2000.12.     서초지점 개설
- 2001.2.       방배지점 개설
- 2002.2.       광장지점 개설
- 2005         인천, 대전, 대구 지점 개설

## 2. 수탁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신탁 자산의 보관
- 나.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자산의 결제
- 다.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른 환매 및 배당금을 지급
- 라.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준수 감독
- 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기타 업무
  - 이자, 배당, 수익금, 임대료 등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인수
  - 공사채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기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수시로 수수료의 수령

## 3. 업무위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델리티 미국 주식투자신탁-모의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 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자산을 제외함)
-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수탁회사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행

## 4. 의무 및 책임

**가. 수탁회사의 선관의무:** 수탁회사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투자신탁 계약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운용행위 감시:**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그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

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 수탁회사의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IV. 일반사무관리회사

#####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개요

회사의 상호: HSBC 펀드서비스(주)

주소: 우편번호 150-73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빌딩 6층, 전화: 3771-9800

설립일: 2000년 3월 23일

등록일: 2000년 3월 23일

금융감독위원회 펀드 일반사무관리업무 등록: 2000년 8월 28일

HSBC 그룹으로 합류: 2003년 8월 1일

##### 2.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

가. 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다양한 사업활동

나. 투자회사 주식발행 및 해당 주식의 소유권 이전

다. 투자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회사형 (뮤추얼 펀드) 및 계약형 (단위형 신탁) 펀드 각각의 펀드 일반사무관리를 아웃소싱한 경우 해당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라.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따른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공시

마. 투자회사를 위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하여 일반사무관리업무

바. 투자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위임한 기타 업무

##### 3. 업무위탁

해당사항 없습니다.

##### 4.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및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약관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V. 채권평가회사



## 1. 회사의 개요

한국채권평가는 채권시가평가제 도입으로 2000년 5월 29일 국내최초의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어 2000년 7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가격평가 전문회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주주는 한국기업평가(주), 이벨류(주), 국민은행, 산업은행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재 자본금은 50억원입니다. 현 주소지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입니다.

KIS 채권평가는 2000년 6월 20일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가격평가 전문회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 주소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입니다.

## 2. 주요 업무

- 가. 채권 시가평가
- 나. 기업신용평가정보 서비스
- 다. 채권지수 서비스

## 제4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I. 수익자의 권리

####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 가.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나. 수익자 총회의 소집

- (1)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본 조에 따른 통지 이후에 자산운용회사가 지정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2)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

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후 1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3년간 계속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5) 자산운용회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6)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행사합니다.
- (7) 위 1.가. 단서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위 (2), (3),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 다.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하는 특정 일자 현재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신탁약관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출석한 수익자(직접 또는 대리 불문)의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의 동의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1.가. 단서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위 정족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 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1)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요구하는 양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세한 정보는 수익자에게 발행된 통지서에 포함됩니다.
- (2) 증권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 의결권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수익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위임장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3개의 자투자신탁과 1개의 모두자신탁으로 구성된 경우를 가정하여 비례적 의결권 행사를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자투자신탁 의결내용	모투자신탁 보유좌수	모투자신탁 의결내용
자투자신탁 A 1,000좌	찬성 500/반대 500	200좌	찬성 100/반대 100
자투자신탁 B 1,000좌	찬성 600/반대 400	100좌	찬성 60/반대 40
자투자신탁 C 1,000좌	찬성 800/반대 200	1,000좌	찬성 800/반대 200

#### 바. 수익자총회의 연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 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

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전까지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1.가. 단서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 사.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판매회사 등이 받는 보수와 관련한 신탁약관의 변경,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신탁기간의 변경,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신탁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수익자총회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전에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본 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신탁약관 제22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아. 수익자명부 관리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은 관련 법령·이 투자신탁의 신탁약관·위탁계약서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수익자총회 개최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 투자신탁이므로 수익자총회 개최내역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2.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및 경비를 공제한 후의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두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장부, 서류의 열람 및 등, 초본 교부청구권에 관한 사항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투자설명서, 신탁약관, 일반사무관리계약 및 이 투자신탁에 관한 투자운용위임계약 등 이 투자신탁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시에는 수익자가 장부 및 서류를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를 진술해야 합니다. 장부 및 서류 열람 등 요청이 수락되면 수익자는 정상적인 영업시간동안 자산운용회사의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에게 통지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본을 제공합니다.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의 자산명세서, 자산매매 거래내역서, 기준가격 대장 및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이 투자신탁의 장부 및 서류를 검토하거나 그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자산운용회사에게 요청하며 요청받은 정보는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법 제125조 및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제한하에서 제공됨을 투자자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i) 이 정보의 공개 또는 제3자의 사용은 이 투자신탁의 다른 수익자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ii) 자산운용회사는 다른 사람들이 자산운용회사 고유의 투자방법 및 기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정보를 엄중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 (iii) 이 투자신탁의 데이터를 시차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은 수익자들의 단기 투자전망에 영향을 미치며, 투기업자 및 기타 전문 트레이더들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악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 (iv) 이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수익자들의 이해

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탁회사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의 투자 활동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감독을 하게 됩니다.

수익자에게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상기 사유는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함이라는 것이 자산운용회사의 견해입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위 법 제125조 및 법 시행령 제 106조에 따른 제한 범위내에서 그 재량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욱 신속히 그리고 자주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이 투자설명서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가. 신탁약관의 변경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는 수정된 신탁약관을 체결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을 규율하는 신탁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신탁약관의 규정에 따라 신탁약관의 변경을 위해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서 신탁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으로 인한 수정 또는 수정사항이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가 판단한 경우 등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II. 공시

##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가. 정기공시

- 1) **경영에 관한 보고:** 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영업연도의 결산보고서 및 매 분기의 정기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산보고서 및 정기보고서를 제출 받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는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2) **경영에 관한 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월 이내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매 분기말(결산일을 포함하는 분기를 제외)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3) **신탁약관의 열람:**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해지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산운용회사의 본점 및 판매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신탁약관(모투자신탁 신탁약관 포함)을 비치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가 신탁약관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이를 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 4) **운용실적의 공시:** 자산운용협회는 간접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이 포함된 운용실적을 간접투자기구의 종류, 투자대상, 매입자산유형 등으로 구분 비교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자산운용보고서, 영업보고서, 사업보고서

- 1)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법령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해당 분기말로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하며, 자산운용보고서는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이거나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하지 않기로 한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 **영업보고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한 서류를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사업보고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수탁회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 1)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즉 매년 12월 31일) 후 2월 이내에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수탁회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작성한 수탁회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합니다.
- 2)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인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에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모투자신탁의 경우 자산운용보고서와 수탁회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며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탁회사보고서가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기공시 사항(보고서 포함)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2. 수시공시

### 가. 약관변경사항에 대한 공시

신탁약관이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되면,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모든 수익자에게 변경통지를 행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신탁약관이 수익자총회의 결의 없이 변경되면, 신탁약관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1회 이상 공고합니다.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 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수익자가 신탁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 신탁약관의 변경에 관한 공시는 이하의 나. 수시공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탁약관에 따라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공시사항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중앙일보 및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합니다.

## 나. 수시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4) 이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5)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6)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7)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 (8) 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여하한 사항의 발생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그 내용
- (9) 법령상 요구되거나 한국 법원 또는 규제당국의 재량에 의한 공시

※ 수시공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의결권 행사

투자신탁 수익권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4부 I.1.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타 장부 및 서류에 관한 공시요청은 제4부 I.3.에 기재한 방침이 적용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판 매 일 : \_\_\_\_\_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